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655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65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835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3. 3.

판결 선고 2016. 3.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835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915,235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경상북도 의성군 D 임야 28,959m²에 관하여,

-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9. 18. 접수 제13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A, B

제1심판결 중 피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005. 4. 12.	8,500만 원(2006. 4. 11.)이후 보증원금은 8,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4. 3.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원
2009. 2. 9.	2억 8,500만 원(2010. 2. 9.)이후 보증원금은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억 원
2013. 2. 7.	2억 2,500만 원(2014. 2. 7.)이후 보증원금은 2억 25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억 원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E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 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임)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채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 B의 연대보증

피고 A,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E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4. 7. 10.부터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58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E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80,660,405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0. 1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58,700,923원,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6,575,4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E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및 변제계획

- 1)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58호 사건에서 2015. 4. 1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 2)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①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년도(2015년)에 현금 변제하고, 미변제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잔액에 대하여 연 2.85%를 적용하여 준비년도(2014년)부터 제1차년도(2015년)까지 발생한 이자를 제1차년도(2015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② 회생채권 중 구상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36%는 출자전환하고 63.64%는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우리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 3)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E는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원고의 회생담보권 56,000,000원과 개시 후 이자 1,998,279원은 2015년에 변제하고,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177,586,288원(원금 174,105,352원과 개시 전 이자 3,480,935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은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14년)에 분할하여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 4) E는 회생계획안에서 2015. 12. 30. 변제하기로 한 원고의 회생담보권 57,998,279원(원금 56,000,000원과 개시 후 이자 1,998,279원)에 대하여 변제기 보다 앞선 2015. 11. 30.에 57,862,728원을 변제하였다1).

마. 피고 B와 피고 C의 부동산 매매

피고 B는 2014. 8. 5. 피고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상북도 의성군 D 임야 29,85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9. 18. 접수 제13223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B(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현재 315,915,235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5,915,2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E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변제기를 연장해주었고, 그 효력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원고가 구하는 연대보증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한편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현재 308,330,13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액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원고의 회생담보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개시 후 이자 1,998,279원은 2015년에 변제하고,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177,586,288원(원금 174,105,352원과 개시 전 이자 3,480,935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은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14년)에 분할하여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을 변제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E는 2015. 11. 30. 원고의 회생담보권 57,998,279원(원금 56,000,000원과 개시 후 이자 1,998,279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E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한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 310,816,743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E의 채무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의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 E와 같은 310,816,743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로부터 2015. 11. 30.에 57,862,728원을 변제받아, 8,177,258원을 법적절차비용에, 나머지 49,685,470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315,915,235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변제한 위 57,862,728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E의 회생담보권 변제 금액 중 8,177,258원을 법적절차비용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310,816,743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310,816,743원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2), 제567조3), 제625조 제3항4) 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 위 관련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② 주채무자인 E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현금 변제할 채권액 310,816,743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우리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주채무자인 E는 현금 변제할 채권액에 대하여 2019년부터 분할하여 변제하고 각 그 변제기까지는 별도로 이자나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 연장은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연장 자체만으로도 채무의 감경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 연장만을 따로 분리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대보증인은 즉시 현금 변제할 채권액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현금 변제할 채권액에 대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여 변제기 이후에만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주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한 것이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경 또는 면제하여 기업인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보인다.

④ 원고는 관련 규정에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한 비율'은 '해당 채무의 액수'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 연장은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 연장이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비율'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가 '해당 채무의 액수'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변제기 연장에 따른 주채무의 감경을 배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816,743원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피고 C이 201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E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5일 후인 2014. 8. 10. E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호에 의해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 80,660,405원, 2014. 10. 17. 우리은행에 465,276,33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E의 사내이사로서, E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정당한 매매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임영우

판사최한순

1) 변제계획보다 일찍 변제하면서 이자가 일부 감액되었다.

2)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3)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